

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인사위원회 규정

제정 2024. 3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서울대학교 학칙」 제41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학부장, 교무부학부장, 학생부학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은 정교수 중에서 교수회에서 선출하여 학부장이 임명한다.

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학부장이, 부위원장은 교무부학부장이 된다.

제3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 의결 조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차기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제5조에 따라 제척위원이 있는 경우의 위원 정수는 그 제척위원 수를 감한 수로 한다.

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⑥ 위원회 회의록은 부위원장이 작성하고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·날인한다.

⑦ 위원회는 전임교원 신규채용을 위해 모집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, 운영 등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수회가 위임한 사항(「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교수회 규정」 별표)
2. 그 밖에 교원인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

제5조(제척사유) 위원회 의안 중 위원 자신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심의

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부칙 (2024. 3. 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첨단융합학부 설립준비단 인사위원회 위원은 본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첨단융합학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.